책임강의시수 및 강의료지급규정

제정 1986.12. 3.	개정 2012. 8. 1.	개정 2024. 3. 1	개정 2026. 9. 7.
개정 1992. 9.24.	개정 2017. 6. 1.	개정 2025. 5. 1	
개정 2009. 3. 1.	개정 2019. 8. 1.	개정 2026. 2.23	
개정 2009. 7. 1.	개정 2022. 9. 1.	개정 2026. 3. 1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교원의 책임강의시수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: 2026.2.23)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본 대학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“특수강의”라 함은 실험, 실습,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. (개정: 2026.2.23)
2. “보통강의”라 함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평상수업을 말한다. (개정: 2026.2.23.)
3. (삭제: 2026.2.23.)
4. “초과강의”라 함은 책임강의시수를 초과하는 수업을 말한다. (개정: 2026.2.23)
5. “시간강의”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자가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. (개정 : 2019. 8. 1)(개정: 2022. 9. 1)(개정: 2026.2.23)

제3조(책임강의시수) ① 본 대학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수는 6시수로 하되, 인문사회과학부 소속 전임교원은 12시수로 한다. 다만, 휴직 또는 연구년 등으로 인해 연중 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 연간 책임강의시수는 그 절반으로 한다. (개정: 2026.2.23) (개정: 2026.9.7.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본 대학 직제규정에 따른 보직을 수행할 경우,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강의시수의 일부를 감면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보직을 겸무하는 경우에는 감면시수가 높은 한 개의 감면사유만을 적용하며, 보직 수행기간이 1학기 이하일 경우에는 3시수(인문사회과학부는 6시수)를 감면한다. (개정: 2009.7.1.) (개정: 2017.6.1.)(개정: 2026.2.23)(개정: 2026.3.1.)(개정: 2026.9.7.)

1. 부총장, 산학협력단장, 처장, 포항가속기연구소장 : 전체 감면
2. 대학원장, 전문 및 특수 대학원장, 학과장 : 3시수 감면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 책임강의시수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책임강의시수를 감면받고자 하는 교원은 학기 시작 전까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책임강의시수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09.7.1.) (개정: 2017.6.1.)(개정: 2026.2.23)(개정: 2026.3.1.)

1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: 직무의 정도에 따라 일부 감면

2. 신규부임 교원: 부임후 첫학기(학기중 부임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)에 3시수 감면. 단, 학과 교과운영을 위해 필요시 그 다음 학기로 이월 가능.
3. 교원 및 교원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: 출산 학기 및 출산 직전(후) 학기 중 한 학기에 한하여 3시수 감면(인문사회과학부 6시수) (개정: 2025. 5. 1)(개정: 2026.2.23)(개정: 2026.9.7.)

제4조(책임강의시수의 인정) ①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교과목 유형별 강의부담을 고려하여 인정을 달리하거나 미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: 2026.2.23.)

②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책임강의시수의 연간 합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만큼 책임강의시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. (신설: 2026.2.23.)

제5조(강의료 지급기준) ① 강의료는 교원의 직위 및 강의의 구분에 따라 매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할 수 있다. (개정: 2026.2.23)

② (삭제: 2026.2.23.)

③ 독립회계단위(독립채산제)로 운영되는 기관의 강의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: 2022. 9. 1)

⑤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중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5조의2(초과강의료) ① 제4조에 따라 산출한 전임교원의 연간 인정시수가 제3조 제1항의 연간 책임강의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연구년, 휴직, 또는 보직 수행 등으로 책임강의시수가 감면된 경우에는 초과강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, 초과강의료를 지급한 강의는 책임강의시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. (개정: 2026.2.23)

② 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자의 초과강의료는 따로 정한다. (신설 : 2022. 9. 1)

제6조(강의료의 계산)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.

1.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되,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보통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. (개정: 2019. 8. 1)
2. 강의료는 주단위로 계산한다. 단, 학기말 또는 학년말 종강의에 있어서는 1주 미만을 1주로 계산할 수 있다.
3.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시간강의료는 따로 정한다 (신설: 2022. 9. 1)
4.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따로 정한다. (신설: 2019. 8. 1)

제7조(강의료 지급의 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험기간

2. 등록기간
3. 정규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전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
4.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할 때

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(강사 포함)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: 2019. 8. 1)

제8조(강의료 지급기일) 교원연봉제운영규정 제12조를 적용한다.(개정 : 2009.7.1.)

제9조(강의시간의 제한) 전임교원의 주당강의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부득이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개정: 2019. 8.1)

제10조(타대학 출강) 본 대학의 교원이 타대학(연구원 포함)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대학의 담당시간수를 합하여 주당 담당 총시간수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2년 9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25년 2월 17일 부터 2025년 4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제4조 제3항의 제3호를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2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본 규정 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9월 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